

학회 및 회원 소식

■ 제3회 카프카 논문상 수상



11월 4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한국카프카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박은주(연세대) 선생님의 2015년 논문 『『성』의 지형학 - 카프카의 『성』에 나타는 경계 및 공간 구상』(『카프카연구』 34집 게재)이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일백만 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카프카 논문상은 앞으로도 2년에 한 차례씩 『카프카연구』에 투고된 카프카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

■ 회원 소식 및 신간/공연 안내

- ▶ 로베르트 발저: 『세상의 끝. 로베르트 발저 산문·단편 선집』, 임홍배 역, 문학판, 2017년 12월 11일



발저의 산문과 단편 중에서 60여 편을 골라 번역한 책이다. 발저의 글쓰기의 특징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글들을 선별하였고, 그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소재와 주제별로 분류하여 1부: 자연·가족·자화상, 2부: 사랑과 고독, 3부: 세상의 이치, 4부: 삶과 노동, 5부: 문학예술론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발저의 이야기에는 무일푼 실업자, 노동자, 말단 사무원, 부랑자, 하인, 시동, 떠돌이 예술가, 가난한 시인, 아웃사이더, 고독한 산책자가 주로 등장한다. 발저는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가치와 통념이 허상이 아닌지 끊임없이 되묻는다. 그래서 그의 산문은 고정관념을 깨는 사유의 실험장이 된다. 아감벤이 말하듯이 “발저의 작품은 카프카처럼 인간의 실존을 문제 삼는 독특한 실험이며, 그의 실험은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인간의 존재방식 자체를 보여준다.”

- ▶ 정항균 지음: 『아비뇽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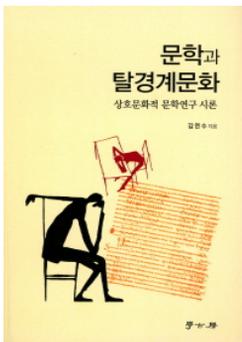
2017년 9월 30일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저자인 스티븐 핑커는 우리가 오늘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이와 관련된 담론도 대단히 활발하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은 폭력을 새롭게 정의하려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폭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과연 폭력을 물리적, 신체적 폭력으로 국한시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판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폭력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폭력에 대한 정의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 가능하

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또는 구조적 폭력), 가시적 폭력과 비가시적 폭력으로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아와 타자 간에 존재하는 연역학적인 폭력인 부정성의 폭력 외에 긍정성의 폭력 개념을 제시한 한병철의 관점을 이어받되 더 발전시켜 이념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폭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2부에서는 법과 폭력, 타자와 폭력, 생명권력과 폭력,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폭력의 다양한 양상과 그것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다.

▶ 김연수 지음: 『문학과 탈경계문화 - 상호문화적 문화연구 시론』, 학교방, 2017년 10월 30일



역설적으로 독일어권 문학연구에 있어서 문화학적인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문예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호문화적 문예학 Interkulturelle Literaturwissenschaft’의 문학연구에 대한 이론적 전제들과 구체적인 분석시례를 제시한다. 상호문화적 문예학이란, ‘문학’을 더 이상 텍스트 내재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텍스트의 안과 밖, 혹은 그 사이로 문화와 문화의 만남, 교류, 충돌과 갈등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문화의 경계들을 넘나들며 문학을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다. 작가가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단계와 독자가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단계, 그리고 문학연구가가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문화적인 경계넘기, 탈경계문화 현상, 문화적 차이와 상이성 등을 논할 수 있는 문학작품들은 상호문화적 문예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문학이 문화적 차이나 담론들을 어떤 미적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테마화하며, 그런 문학적 형상화들이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가?’라는 질문

을 화두로 던진다. 본 연구서에서는 문화횡단적 글쓰기, 문화횡단적 독서, 문학의 상호문화적 잠재성에 관한 논의를 프란츠 카프카, 다와다 요코 등의 문학텍스트 분석을 토대로 고찰한다.

▶ 이동용(건국대) 지음: 『사막의 축제. 니체의 너무나 인간적인 생의 예찬』, 1-2권, 이파르, 2017년 7월 26일

인생이 고해일까. 사막 같은 현실이 삶일까. 눈물의 바다가 됐든 황량한 사막이 됐든 사람은 살아야 한다. 사람은 삶을 통해 의미를 찾고, 삶을 사람을 통해 구현된다. 삶은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다. 실망한 것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인생 막바지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고 말할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게 될까? 허무할까. 아니면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을까.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이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미래를.



▶ 이동용(건국대) 지음: 『사람이 아름답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 들려주는 생의 예찬』, 이담북스, 2017년 9월 8일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다. 어쩔 수 없이 혼자라서 그런 거다. 사랑은 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사랑할 짝을 찾아 방황하는 게 인생이라면 말이 너무 거창한가. 아직 가보지 못한 인생 막바지,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며 눈을 감지 않을까. 사랑 때문에 사는 맛이 났다고 말하지 않을까. 삶을 삶답게 하는 데는 누가 뭐래도 사랑이 최고다. 혼자서 싫어서 그런 거다. 운명을 알게 하거나 극복하게 하는 순간에는 모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바로 ‘선악의 저편’에 있다.



한국카프키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 본 학회는 한국카프키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학회는 카프카 및 독일어권 현대문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외국문학의 발전적 수용을 통해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 3 조 :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각종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로서 정회원(박사과정 이상)과 준회원(도서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 본 학회의 연회비는 전임 30,000원, 비전임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 5 조 :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이사 1명, 이사 20~30명 내외로 한다.

제 6 조 :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7 조 :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8 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 전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0조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제11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 이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총무이사(1인) : 각종 행사 준비, 회원관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2) 연구이사(약간명) : 학술발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편집 및 출판이사(약간명) : 출판물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
- 4) 학술 및 국제이사(약간명) : 학술 및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5) 문헌 홍보이사(약간명) : 학회 홍보 및 문헌에 관한 사항

제4장 회 의

제13조 :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4조 : 정기총회는 매 년 10월에 개최한다.

제15조 :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1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16조 :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가능하며 본 회의 각종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며 참석인원의 1/2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17조 :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8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된다.

- 1)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을 둔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선출된다.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한다.
- 3)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출판 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임기는 상임이사 임기와 같다.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4) 편집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교체, 증가, 축소되는 편집위원은 회장이 먼저 임명하고 추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대학교원 또는 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에서 학술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편집출판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제19조 :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카프카연구』의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편집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4)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는 다음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 1) 논문투고요령은 별도로 게재한다.
- 2) 심사의뢰 :

가.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나. 기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우선적으로 편집위원에게 위촉하며, 여타의 논문에 대해서는 세부전공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자에게 위촉한다.

다. 1인의 심사자가 같은 기간에 심사할 수 있는 논문을 3편 이하로 제한한다.

- 3) 심사: 심사위원은 아래의 다섯 가지 세부 심사항목에 입각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한다.

가.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 (20점)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 (20점)

다. 연구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30점)

라.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0점)

마. 학회지 논문작성체제 준수여부 (10점)

- 4) 평가점수의 총합이 90-100점일 때 ‘무수정 통과’(A), 80-89점일 때 ‘부분 수정 통과’(B), 70-79점일 때 ‘수정 후 재심사’(C), 70점 미만일 때 ‘게재 불가’(D)의 등급을 부여한다.

- 5) 1차 편집회의 :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자 모두 ‘무수정 통과’(A)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 불가’(D)와 ‘수정 후 재심사’(C)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불가’(D)와 ‘무수정 통과’(A)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게재 불가’(D)와 ‘부분 수정 통과’(B)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심사자에게 위촉하여 ‘수정 후 재심사’(C)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 게재를 불허한다. 심사자 모두 ‘수정 후 재심사’(C) 판정을 내린 경우, ‘수정 후 재심사’(C)와 ‘부분 수정 통과’(B)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C)와 ‘무수정 통과’(A)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심사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이 끝난 후 재심의 절차를 거쳐 ‘수정 후 재심사’(C)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 게재를 불허한다. 이때 ‘무수정 통과’(A)와 ‘게재 불가’(D)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해 준다.

- 6) 2차 편집회의 : 편집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 과정을 통해 게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무수정 통과’(A)와 ‘게재 불가’(D)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 7)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 ‘게재 불가’(D)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가 들어오면 편집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3의 심사자 2인 이상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심을 받은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 9) 논문 게재가 확정된 원고들은 투고일, 심사완료일, 투고자 연락처를 편집위원회에서 부기하여 게재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 :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 총무이사는 일 년간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확인을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 회계 연도의 시작은 매년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사 업

제24조 : 본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발표회
2. 연구논문집의 간행
3. 카프카의 저작물 및 관련 문헌의 번역

제8장 부 칙

제25조 : 본 학회 회칙은 198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 개정된 회칙은 198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 개정된 회칙은 199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 개정된 회칙은 1996년 5월부터 시행한다.

제29조 : 개정된 회칙은 199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 개정된 회칙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 개정된 회칙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 개정된 회칙은 200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 개정된 회칙은 200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 개정된 회칙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 개정된 회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 개정된 회칙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 개정된 회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키프키횱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와 논문의 중복 사용, 기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거나 출판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언·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연구소의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 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본 학회 편집위원과 편집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인지한 이후 15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 3인에서 6인 사이의 인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최소한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피조사자와 같은 학부나 대학원 출신자는 1/3 이상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기타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조사위원회는 활동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에게 조사위원의 추가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②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논문 취소, 투고 제한,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타 학회지의 징계조치)

타 학회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논문 게재가 제한된 자는 본 학회지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논문 게재를 할 수 없다.

제19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카프키연구』 논문투고 규정

1. 투고자격

- 1)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2) 회원이 아닌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게재조건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카프카 및 카프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학술논문
- 2) 카프카의 작품번역(초역에 한함)
- 3) 카프카와 관련된 서적, 공연에 대한 서평 및 공연 평(번역포함)
- 4) 독일어권 현대문학(문예학, 문학사서술론, 예술론 포함), 매체 및 지역학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학술논문

3. 투고금지규정

다음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1) 타 학술지 혹은 기타 매체에 이미 발표된 논문
- 2)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타 학술지 혹은 기타 매체에 투고 중인 논문
- 3) 편집위원회는 1, 2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자에게 투고 철회를 요청하고, 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게재 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논문 게재의 취소 조치를 취한다.

4. 마감 및 발행일자(연 2회)

논문접수마감	4월 30일	10월 31일
학회지 발행 예정	6월 30일	12월 31일

5. 논문 제출 방법

- 1) 논문 전체 분량이 규정으로 제시된 포맷으로 A4 용지 20쪽을 기준으로 최대 25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 2) 원고는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한국카프카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redaktion.kafka-gesellschaft.com>)에 탑재한다. 심사료(4만원)는 총무이사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3) 게재 결정을 통보받은 후 최종 교정 원고를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 4) 저자 규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맨 앞에 명기하고, 이어 공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한다.
- 5) 투고논문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며, 6월 30일 발간되는 학회지는 4월 30일까지, 12월 31일 발간되는 학회지는 10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6) 투고관련 문의 : 장제형 편집상임이사
 - 주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 전화 : 032) 835-8137 휴대폰: 010-5029-3308
 - E-Mail: longlicl@gmail.com
- 7) 게재료
전임교원: 쪽당 5천원 비전임교원: 쪽당 3천원
연구비 수혜자: 쪽당 5천원 + 편당 5만원
(20쪽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의 게재료를 부과함)

『카프카연구』 논문작성 양식

I. 호글 97 이상

II. 구성

논문제목 - 필자명/소속 - 본문 - 참고문헌 - 독문요약(제목/필자명/소속/본문) -
검색어/Stichwörter - 필자 E-Mail 주소

III. 표기방식 (국문논문 기준)

1. 논문제목

- 논문제목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한글-원어의 ‘병기’는 본문에서 처음 나올 때에 한한다.)
예) 프란츠 카프카의 『성』 (○)
Franz 카프카의 『성』 (×)
프란츠 카프카의 『성 Das Schloß』 (×)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의 『성 Das Schloß』 (×)
- 예) 전치사 ‘als’의 격지배관계 (○)
- 제목과 부제목은 줄표(-)로 구분한다. 부제목은 행을 바꿔,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제목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한국에서의 카프카 문학 수용
- 카프카 작품의 수용과정과 양상

2. 필자명 (소속)

- 필자명과 소속 사이에 한 칸을 띄운다.
예) 홍길동 (부산대)

-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제1저자 (소속) · 제2저자 (소속) · 제3저자 (소속)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장기철 (경기대) · 박민수 (경북대) · 김영신 (전남대)

3. 본문

1) 한글-독일어 병기

-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한글과 원어를 병기한다.
한글과 원어 사이에 한 칸을 뒀다

예) 엠리히 Emrich

-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카프카, 프라하, 「변신」 (○)

카프카 Kafka, 프라하 Prag, 「변신 Die Verwandlung」 (×)

-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문학 Literatur (×) 미학적인 ästhetisch (×)

2) 부호

- 단행본, 잡지: 겹낫표(『 』)로 표기한다.

예) 『소송 Der Proceß』 (처음 나올 때) 『소송』 (두 번째부터)

『노이에 룬트샤우 Neue Rundschau』

- 단행본이 아닌 문헌 속의 글, 개별 논문, 개별 작품, 시 : 홑낫표(「 」)로 표기한다.

예) 「변신」

- 문헌의 출판년도: 문헌기호의 바깥쪽에 띄어쓰기 없이 () 안에 표기한다.

예) 『성』(1926)

- 직접인용: 큰 따옴표(“ ”)로 표기한다.
- 간접인용, 재인용, 강조: 작은 따옴표(‘ ’)로 표기한다.

3) 인용문

- 짧은 내용의 인용은 본문 속에, 긴 내용의 인용(3행 이상)은 본문에서 따로 떼어 별행으로 기술하고 들여 쓴다.
- 별행의 인용문에서는 따옴표를 생략하고, 인용문의 위아래를 한 줄 띄운다.
- 원문은 필요한 경우 각주 처리한다.
- 인용쪽수는 첫 번째 인용 시에만 각주 처리하여 원전 출처와 함께 밝히고, 이후부터는 인용문 마지막에 띄어쓰기 없이 ()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 원문에서 생략한 부분은 ‘[...]’로 표기한다.

4) 인용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참고문헌 표기방식과 동일하되, 외국저자의 경우 ‘이름 성’의 순서로 표기한다. 국내저자는 참고문헌의 경우처럼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며, 성 뒤에 쉼표를 찍지 않는다. 국문 번역서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 두 명 이상의 저자나 두 곳 이상의 지명이 등장하는 경우, 두 저자 이름과 지명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 / ’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표기한다.
- 외국문헌의 경우 앞에서 한 차례 인용된 출처가 반복될 경우에는, 저자명(이름 성)을 모두 써준 뒤에 ‘a.a.O.’로,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성 이름)을 모두 써준 뒤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하고 쉼표(.)를 찍은 뒤 인용쪽수를 밝힌다.
- 바로 앞 번호의 각주와 동일한 출처일 때에는 외국문헌의 경우 ‘Ebd.’로 표기하고 쉼표(.)를 찍은 뒤 인용쪽수를 밝힌다. 인용쪽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Ebd.’로 표기한다.
- 잡지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 또는 논문의 경우, 외국 문헌은 ‘In:’, 국내 문헌은 ‘실린 곳.’을 적은 뒤 그 글이 실린 잡지나 단행본을 표기한다. ‘In:’ 뒤에는 외국인 저자명을 ‘이름 성’의 순서로 표기한다.
- 잡지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 또는 논문의 경우 반드시 쪽수를 밝힌다.
- 출판사명, 출판 장소 앞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마침표(.)를 찍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인용쪽수 앞에는 쉼표(.)를 찍는다.

- 출처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다.
- 기타 세부사항은 참고문헌의 예시 및 논문작성예시를 참조한다.

4. 참고문헌

- 국문논문에서는 ‘참고문헌’ ‘일차문헌’ ‘이차문헌’ 등으로 표기한다.
독일어논문에서만 Literatur, Primärliteratur, Sekundärliteratur 등으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 국내문헌 - 외국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며, 한글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유럽어문헌은 저자명(성,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예) 프란츠 카프카: 변신. 이주동 옮김. 솔 1997.

Kafka, Franz: Der Proceß. Kritische Ausgabe. Hrsg. v. Malcolm Pasley. New York 1990.

- 기타 세부 표기방식은 논문작성예시를 참조한다.

5. 독문요약

- 필자명: ‘성, 이름’ 식으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소속대학: 약식표기 ‘Uni’로 통일하여 쓴다. ‘Uni’ 다음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University 혹은 Univ. 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Mokwon Uni Seoul National-Uni Chonbuk National-Uni
Ewha Frauen-Uni Hankuk Fremdsprachen-Uni

- 논문 제목: 제목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부제목은 행을 바꿔 줄표(-) 뒤에 작은 글씨로 표기한다.

예) Kafkarezeption in Fernostasien

- Kultureller Kode und politisch-gesellschaftliche Prägung

- 책 제목은 이탤릭체로 쓰며, 겹낫표(『 』)를 사용하지 않는다.
책 속에 실린 글은 이탤릭체를 쓰지 않고 큰 따옴표(“ ”) 안에 표기한다.
인용은 큰 따옴표(“ ”) 안에 쓰고, 강조 및 재인용은 작은 따옴표(‘ ’) 안에 쓴다.
인용부호는 독일식 부호를 쓰지 않고, 한글식 부호(“.....” 또는 ‘.....’)로 통일하여 쓴다.

- 독문은,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독일어정서법에 따라 작성하고, 반드시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다.

- 검색어(한글, 독일어로 각 4개)를 기입한다.
검색어:
Stichwörter:

- 필자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필자 E-Mail 주소:

카프카연구 38

인쇄일 2017년 12월 25일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연 수

발행처 한국카프카학회

인 쇄 도서출판 월인

Tel: (02) 912-5000, FAX: (02) 900-5036

E-mail: worinnet@hanmail.net

한국카프카학회

연락처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총무이사 함수옥

Tel: 010-2040-5650

E-mail: hamsuok@hanmail.net

학회홈페이지: <http://kafka-gesellschaft.com>